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9호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마. 지원기준, 신청,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 바. 중복지원제외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22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수급자

4.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임실군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복지용구

2. 노인 낙상 예방 교육프로그램

② 군수는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개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5조제1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조례 제2429호 19. 07. 01.)는 폐지한다.

노인 낙상 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주소,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보장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지원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 동의 】

- 임실군은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

□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 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